

## 방사선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고시

2000년 10월4일 원자력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(이하 "업무대행자"라 한다)가 원자력법 시행령 제19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부고시 제2000-12호로 고시하였다.

제1조(권역구분)업무대행자가 동법 시행령 제19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자력법 제65조제3항 제5호의 업무(이하 "방사선안전관리 업무"라 한다)를 대행할 수 있는 권역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)
2. 충청권(대전광역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)
3. 영남권(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, 경상북도)
4. 호남권(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전라북도, 제주도)

제2조(방사선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) 업무대행자가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1조에서 규정한 권역별로 지역사무소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주사무소가 위치한 권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항의 주사무소 및 지역사무소는 각 사무소가 위치한 당해 권역에 대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## 『제54회 방사선취급감독면허시험 및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』 - 응시원서 교부, 접수, 면허시험 시행 -



협회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"제54회 방사선취급감독면허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시험"의 원서교부 및 접수를 수도권지역 회원사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2000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. 올해는 총 330명(감독 313명, 특수 17명)이 접수하였다. 시험은 11. 5(일)에 충남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시행되며 응시자는 시험당

일 820 까지 입실하여야 한다. 시험은 1교시에 원자력관계법령, 2교시에 R취급기술, 3교시에 방사선장해방어, 4교시에 원자력이론(특수 : 의학 또는 치의학중 선택)을 치르게 된다. 시험은 각 교시당 50분이다. 합격자 발표는 12월8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며 합격여부의 확인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험관리실 (☎042-868-0315~19)이나 우리협회(☎02-3411-6494~6) 또는 ARS(대전, 충남지역 700-1903, 기타지역 042-700-1903)를 이용하면 된다.

## 자체보관 밀봉폐기선원 관련 과학기술부 조치사항 안내

과학기술부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밀봉 폐기선원을 자체 보관하는 경우 도난이나 분실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원자력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요구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를 2001년 1월10일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방사성물질규제실)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현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는 밀봉 폐기선원(2/4분기 보고서 보고된 폐 선원 참조)을 2000년 12월31까지 한전원자력환경기술원에 위탁폐기 하거나 제작사로 반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 향후 발생하는 밀봉 폐기선원의 경우에는 보관 폐기일로부터 3개월이내(단, Ir-192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)에 이를 한전원자력환경기술원에 위탁폐기 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하시기 바랍니다.

##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 주요내용

- **목 적** :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 도로에서는 유류·유독물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상수원 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배제하기 위함.
- **시행시기** : 2000. 10. 22부터(계도기간 : 2000. 10. 22~2000. 11. 30)
- **통행제한 차량** : 유류 유독물, 특정수질유해물질, 지정폐기물(액상), 농약 및 원재,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을 수송하는 차량
- **통행제한 지정대상도로**
  - 한강권(2개지역 6개도로) : 팔당호, 잠실 - 낙동강권(2개지역 2개도로) : 덕동호, 회야호
  - 금강권(2개지역 8개도로) : 대청호, 보령호 - 영산강권(2개지역 4개도로) : 주암호, 동북호
  - ※ 자세한 도로구간등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
- **통행증 발급**
  -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 구간을 불가피하게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행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통행증 발급기관장에게 제출
  - 통행증 발급기관장은 신청서에 의거 통행여부를 검토한 후 통행증을 발급하여 교부
  - 통행증 발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되 기간 경과시 재교부 신청
- **통행차량단속**
  - 통행제한을 위반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(수질환경보존법 제 57조제4호)
  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(<http://www.ri.or.kr>) 자료실(관련법령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